

의안번호	제414호
의 결 연 월 일	2016년 월 일 (제 회)

2016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

제 출 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16년 6월 29일

2016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

의안 번호	414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6. 6.29.

제안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2016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㉠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 건립 : 1,000백만원

- 출연 목적
 - 국내 미개척 분야인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산업 전문센터를 오송에 구축하여 유망품목 발굴, 기술지원으로 바이오세라믹의 국제경쟁력 강화
 - 오송의 의약·바이오기술과 소재기술의 융합으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
- 출연 내역 :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 건축비
- 기대 효과
 - 세라믹소재와 바이오콘텐츠 간의 연계를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
 -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 개발 및 조기상용화, 인력양성, 기술지원 등 종합지원 가능 거점 기관 설립
 - 바이오세라믹소재 국산화로 무역 역조 개선 및 고순도 / Scale-up 기술을 통해 미래 신산업 수요 대응
 - 급속한 시장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유망분야의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 개발

1 출연 심의요구서

주관부서	바이오산업과	소속부서장	팀 장	담당주무관	전화
	의료기기헬스팀	임헌동	지용석	나기효,오영은	4622,4623

기관명	한국세라믹기술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출연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 표 : 강석중 ○ 일반현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소재지 :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01(충무공동15-4) -규모 : 4본부 1분원 1사업단 12센터 3실 2팀 -기관성격 : 출연기관 -주된사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세라믹 관련 연구사업, 시험,분석,평가,인증,감정,표준화 사업 · 기술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, 인력양성, 기술지도 사업 · 세라믹 관련 각종 조사, 분석, 기획 등 정책지원 사업 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출연사업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출연 예정금액 : 1,000,000천원(도비) 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단위:백만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 분</th> <th rowspan="2">사업기간</th> <th rowspan="2">2016년 요구액</th> <th colspan="5">재원별</th> </tr> <tr> <th>계</th> <th>국비</th> <th>도비</th> <th>시비</th> <th>기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 건축비</td> <td>2016</td> <td>1,000</td> <td>5,000</td> <td>3,000</td> <td>1,000</td> <td>1,000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			구 분	사업기간	2016년 요구액	재원별					계	국비	도비	시비	기타	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 건축비	2016	1,000	5,000	3,000	1,000	1,000	
구 분	사업기간	2016년 요구액	재원별																									
			계	국비	도비	시비	기타																					
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 건축비	2016	1,000	5,000	3,000	1,000	1,000																						
출연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고령화사회와 함께 융합바이오 분야 (조직재생, 조기진단, 뷰티케어 등)에 대한 수요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미래 성장 동력 산업 육성 필요 																											
근거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업기술혁신촉진법 39조의2 3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세라믹기술원에 관하여는 제38조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기술원”은 “세라믹기술원”을, “제3항 각 호의 사업”은 “제2호항 각호의 사업”으로 본다. ○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 6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부는 설립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, 중앙행정기관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. ○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2조(특정연구기관) 이 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·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(이하 "특정연구기관"이라 한다)으로 한다. ○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3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3조(연구기관의 지정) 법 제2조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. <p>9.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,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,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지도감독 부서인건 (중 평)	○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 건축비 지원 - 국내 미개척 분야인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산업 전문센터를 오송에 구축함으로써 창조경제 패러다임을 견인하는 성장산업 선점 및 충북 경제 성장에 견인
첨부자료	1.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1부. 2. 출연기관 현황(기관연혁, 조직표, 인력현황, 수지표 등) 1부. 3. 출연사업계획서 1부.

1-① 관리 · 감독부서 검토결과서

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

○ 해당 없음

2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

○ '16년 2월 산업부 사업비 조정확정(206억→198억)

- 국비 102억, 도비 48억, 청주시비 48억

○ '16년 5월 제2차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

-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며, 연차별 자원 확보 결과에 따라 추진

○ 한국세라믹기술원은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제39조2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원의 부설기관으로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제38조제6항 및 제39조2 제3항에 의거 출연할 수 있으며, 「특정연구기관육성법」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임

○ 본 사업은 2015.12월에 이미 국비로 착공하였으며, 우리도와 청주시는 충청북도 재정 투자심사가 완료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차적 계획에 의거 출연하여야 함

○ 한국세라믹기술원은 2020년부터 연구 인력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R&D 등 과제 수탁 및 세라믹 제품 인증, 시험분석 등의 수수료 징수를 통하여 자립 할 예정임

3 출연금 검토

(단위:백만원)

	2014년 결산액	2015년 예산액 (최종) (C)	2016년 예산안			
			기관 요구액(A)	실과 검토액(B)	증감(B-A)	전년대비 증감액 (B-C)
계	0	-	1,000	1,000	-	1,000
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센터 건축비	-	-	1,000	1,000	-	1,000

1-② 출자·출연 기관현황

한국세라믹기술원

설립근거	법 률 :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의2				전화번호 : 055-792-2500		
					홈페이지 : www.kicet.re.kr		
주요연혁	- '00. 1 정부조직에서 출연기관화[舊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부설기관] - '09. 5 한국세라믹기술원으로의 명칭변경 및 독립기관화 - '15. 4 경남진주로 지방이전			기관형태 (출자, 출연)	- 출연		
인원현황 ('16.05.31. 현원기준)	계		정규직		비정규직		
	287 명		111명		176명		
임 원 ('16.05.31. 기준)	직 책 (직책명)	성 명 (익명처리)	주요경력 (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)		입 기 (법령상 정해진 입기 기재)		
	원 장 (상임이사)	강○○	前) KAIST 신소재공학과 교수		15.09.09~18.09.08		
	감 사 (비상임)	이○○	前) 국가정보원 부이사관		14.02.04~17.02.04		
	당연직 이사 (비상임)	김○○	산업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		15.03.10~재직기간		
	이사 (비상임)	신○○	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		14.02.01~17.03.20		
	이사 (비상임)	심○○	한양대 신소재공학부 교수		14.02.01~17.03.20		
	이사 (비상임)	정○○	(주)창성 대표이사		14.02.01~17.03.20		
	이사 (비상임)	김○○	한국내화(주) 부사장		14.08.05~16.08.04		
	이사 (비상임)	이○○	(주)사파이어테크놀로지 대표이사		14.08.05~16.08.04		
	이사 (비상임)	임○○	고려대 신소재공학부 교수		14.08.05~16.08.04		
	이사 (비상임)	우○○	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		15.01.19~17.01.18		
	이사 (비상임)	금○○	KIST 前원장		15.11.17~17.11.16		
	이사 (비상임)	신○○	(주)두산퓨어셀 사장		15.11.17~17.11.16		
	이사 (비상임)	한○○	한라대 신소재화학공학과 교수		15.11.17~17.11.16		
주요기능	- 세라믹 및 세라믹 관련 연구개발 사업 - 시험·분석·평가·인증·감정·표준화 사업 - 기술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, 인력양성 기술지도 사업 - 세라믹 관련 각종 조사, 분석, 기획 등 정책지원 사업						
자본금 ¹⁾ (단위:백만원)	1 (직전연도말 기준)			출자·출연액 (단위:백만원)		-	
최근3년간 예산 현황 ²⁾ (단위:백만원)	연도	2013	2014	2015	재무현황 (백만원) '15.12.31기준	자산	103,768
	예산액 ²⁾	66,691	88,881	65,046		부채	18,861
	지자체 지원액 ³⁾	-	-	-		자본 ¹⁾	84,906
경영성과 (단위:백만원) '15.12.31기준	총수익			총비용		당기순이익	
	73,861			48,667		25,194	

①-③ 출연 사업계획서

사업명	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 건립	구분	출자	
주관부서	바이오산업과		출연	1,000백만원(도비)

□ 목적 및 필요성

- 융합바이오 분야 (조직 재생, 조기진단, 뷰티케어 등)에 대한 수요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미래 성장 동력 산업 육성 필요
- 세라믹소재와 바이오기술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 가능

□ 출연개요

- 사업기간 : 2015년 ~ 2019년 (5년)
- 위치 :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59-1번지
- 규모 : 부지 12,935㎡, 연면적 4,950㎡(지하 1층, 지상 4층)
- 총사업비 : 198억원 (국비 102, 도비 48, 시비 48)
- 출 연 액 : 도비 48억원 ('16년 10억원)
- 사업내용
 - 융합바이오세라믹 핵심소재 양산화 공정기술 개발 (R&D)
 - 생산인프라 시설 및 장비 지원 : 양산화 공정 제조설비 등
 - 시험분석 및 인증평가 지원 : 기계·물리·화학적 평가 등
- 추진상황
 - '14.12.24 : 충북도·한국세라믹기술원·청주시 MOU 체결
 - '15. 3. :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특별 분양 승인
 - '15.12. :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건립 공사 착공
 - (주)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(청주), 2015.12.16.~2017.3.31
 - '16. 2. : 사업비 조정(산업부)
 - 206억원 → 198억원 (장비 3종 및 양산화 공정개발비 감)
 - '16.05 : 지방재정투자심사(조건부 승인)
 - 운영비 등에 대한 지방비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며, 연차별 자원 확보 결과에 따라 추진

○ **향후계획**

- 2016년 추경에 지방비 확보 : '16.
-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 공사 준공 : '17.
- 장비구축 및 세라믹 양산화(R&D)사업 : '17. ~ '19.

□ **산출기초**

- '16년 건축비 5,000백만원 (국비 3,000백만원, 도비 1,000백만원, 시비 1,000백만원)
 - 공사비 (건축, 전기, 통신 등) : 4,379백만원
 - 건설사업관리비 : 600백만원
 - 기타경비 (폐기물, 인증수수료) : 21백만원

구 분		차 수	금 액(백만원)	비 고
건설사업관리		2	600	
공사비	건축공사	2	2,400	
	전기공사	1	400	
	통신공사	총차	279	
	관급자재	-	1,300	
기타경비		-	21	폐기물 7, 인증수수료 14
합 계		-	5,000	

□ **기대효과**

- (정성적 기대효과) 융합바이오세라믹산업 분야 국가 위상 강화 및 세계적 융합바이오밸리 조성,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의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재편하여 창조경제 활성화, 산업여건에 적합한 특성화 산업으로서의 고부가가치 미래 유망 품목 발굴
- (정량적 기대효과) 전국의 생산유발효과는 266억원,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73억원, 고용유발효과는 1,331명으로 기대
 - 이 중, 충북에서는 215억원의 생산유발효과, 153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, 1,289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

□ **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**

- 본 사업은 이미 작년에 정부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국비를 이용해 건축 증축 단계에 있으며, 미승인 시 사업 중단될 상황에 있음

* 현재 건축 공정을 15.4% (골조공사, 2층 기둥 및 철근 배근)

관련법령 발취

<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>

제38조(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) ①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(이하 "기술진흥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② 기술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③ 기술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<개정 2013.3.23., 2013.8.6.>

1.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연구
2. 산업기술혁신 관련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
3.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
4.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
5. 산업기술 전문인력 양성
6.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

④ 기술진흥원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, 지역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⑤ 기술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⑥ 정부는 기술진흥원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,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.

⑦ 기술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[전문개정 2009.1.30.]

제39조의2(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 등) ① 세라믹 연구개발, 시험·분석·평가, 기술지원 및 세라믹산업 정책지원 등을 위하여 한국세라믹기술원(이하 "세라믹기술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② 세라믹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시험·분석, 평가인증, 감정, 표준화 사업
2. 기술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, 인력양성, 기술지도사업

3. 세라믹 관련 각종 조사, 분석, 기획 등 정책지원 사업
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산학연 기술협력 및 국제협력사업
 5. 세라믹 및 세라믹 관련 연구개발 사업
 6. 그 밖에 세라믹기술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③ 세라믹기술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기술진흥원"은 "세라믹기술원"으로, "제3항 각 호의 사업"은 "제2항 각 호의 사업"으로 본다. [본조신설 2009.1.30.]

<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>

제2조(특정연구기관) 이 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·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(이하 "특정연구기관"이라 한다)으로 한다. <전문개정 2011.6.7.>

<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>

제3조(연구기관의 지정) 법 제2조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15.9.25.>

1.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
2. 「광주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
3.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
- 3의2. 「울산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
4. 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
5. 「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」 제13조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
6. 「원자력안전법」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
7. 「한국연구재단법」에 따른 한국연구재단
8. 「과학기술기본법」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및 한국과학창의재단
9.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,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,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
10. 「정보통신산업 진흥법」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
11. 「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<전문개정 2011.12.13.>

참고 1

센터 조감도 및 위치도



단지 입주계획

- 입주연형**
- 단지면적 1,331,054㎡
 - 기존시설 296,429㎡(22%)
 - 입주계획 295,424㎡(22%)
 - 의뢰 면적 538,901㎡(40%)
 - 연구원대사실구획



참고 2

건축 추진 및 장비 운영 계획

□ 건축 및 장비 운영 계획

○ 건축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소요금액	설계비	감리비	공사비	세부 항목
건축비	13,000	430	993	11,577	골조공사, 건축마감, 전기,설비,통신

- (실적) 설계('15. 10) → 시공사 선정('15. 11) → 허가/착공('15.12)
- (계획) 토·파일공사('16. 1~4) → 골조공사('16. 5~9) → 마감/준공('16. 10~'17. 3)



* 현재 공정을 15.4% (골조공사, 2층 기둥 및 철근 배근)

○ 장비

(단위: 억원)

구분	장비명	주요용도	총금액
1차년도 (2017년)	투과 전자현미경, X선 회절분석기, T-die 필름성형압출기	화학 분석, 물리 분석, 산업용 소재 양산화 장비	12억원
2차년도 (2018년)	주사전자현미경, 자성특성시스템, 블루온 필름라인	화학 분석, 물리 분석, 산업용 소재 양산화 장비	12억원
합 계 (6종 6대)			24억원